

[서식 예] 즉시항고장(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 데 대한)

즉시항고장

항 고 인 ◆◆◆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항고인은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합○○○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○○년 ○월 ○일 피고보조참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.

원결정의 표시

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. (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: 20○○. ○. ○.)

항 고 취 지

- 1. 원 결정을 취소한다.
- 2.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

항 고 이 유

항고인은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합○○○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돕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의 신청을 하였는데, 원고의 이의의 진술만을 믿은 같은 법원은 항고인의 피고보조참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.

그러나 항고인은 위 사건의 차용증서에 서명·날인한 피고 〈〉〉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인바, 항고인의 소송참가는 불허한다는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항고인 ◆◆◆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고등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원심법원	제출기간	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 이내
제출부수	항고장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73조 제3항
	・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(민사소송법 제442조)		
불복절차	·즉시항고의 각하·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		
및 기간	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재항고하여야 함		
	(민사소송법 제444조)		
	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
비 용 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소송참가